



소비자 보호 생활법률 사례

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
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Q

사이버몰에 사업자의 상호명, 영업 소재지, 전화번호 등을 꼭 명시해야 되나요?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?

A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. <동법 제10조 제1항>

- 상호 및 대표자 성명
- 영업소 소재지 주소(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)
- 전화번호 · 전자우편주소
- 사업자등록번호
- 사이버몰의 이용약관
-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▶ 또한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· 광고를 행하는 경우도 상호 및 대표자 성명, 주소 · 전화번호 · 전자우편주소, 공정거래위원회나 시 · 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 · 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 <동법 제13조 제1항>

▶ 위 사항을 위반하여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<동법 제45조>

**Q**

통신판매업자의 개업 및 폐·휴업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까?

신고를 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?

A

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·주소 및 전화번호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를 포함한다)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인 경우)을 첨부하여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(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출)하여야 합니다. <동법 시행령 제13조>

→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<동법 제42조>

▶ 사업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), 사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, 사업자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<동법 시행령 제16조>



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미리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<동법 시행령 제16조>

다만, 영업의 폐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
→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<동법 제45조 제2항>